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희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0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4년 11월 17일

발 의 자 : 김희걸, 우미경 의원

찬 성 자 : 성백진, 김태수, 유동균, 김상훈,
박기열, 김영한, 김생환, 오승록,
장우윤, 장인홍, 박준희, 남창진,
이현찬, 김인제, 이승로, 강구덕
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
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“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보조금 관리에 관
한 법률」”으로 하고 “부여하다”를 “주다”로 하며 “취하다”를 “밟다”
로 하고 “현저한”을 “크게”으로 하며 “취·창업”을 “취업·창업”으로 하
고 “적합하도록”을 “맞도록”으로 하며 “경감”을 “줄이다”로 하고 “교
부결정”을 “발급결정”으로 함. (안 제7조, 제8조, 제11조, 제15조, 제19
조, 제21조, 제22조, 제2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부여할 수”를 “줄 수”로 한다.

제8조중 “취할 수”를 “밟을 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중 “현저한”을 “뚜렷한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호중 “취·창업”을 “취업·창업”으로 한다.

제15조중 “취할 수”를 “밟을 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중 “현저한”을 “크게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4항중 “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중 “적합하도록”을 “맞도록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중 “경감할”을 “줄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중 “경감”을 “줄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제2호중 “경감”을 “줄임”으로 하고 “경감한다”를 “줄인다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중 “경감할”을 “줄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중 “경감한다”를 “줄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“경감한다”를 “줄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중 “경감한다”를 “줄인다”로 한다.

제29조제2항중 “교부결정”을 “발급결정”으로 하고 “취할 수”를 “뺄 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용허가 등)	제7조(사용허가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여성플라자의 기능,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하며, 여성플라자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줄 수 -----.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플라자의 사용허가를 취소·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	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 등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났을 수 -----.
1.~3. (생 략)	1.~3. (현행과 같음)
4. 여성플라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	4. ----- 크게 ----- -----
제11조(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)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.	제11조(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) -- ----- -----.
1.~2. (생 략)	1.~2. (현행과 같음)
3.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·창업 촉진 사업 추진	3. ----- 취업·창업 ----- -----
제15조(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)	제15조(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)
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~2. (생략)

3. 여성발전센터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

제19조(운영비 등의 지원)

①~③ (생략)

④ 설립비 또는 운영경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1조(사용료의 부과·징수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해당 여성관련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,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2조(사용료의 감면 등)

① 시장은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

1.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

----- 밝힐 수 ----.

1.~2. (생략)

3. ----- 뚜렷한

제19조(운영비 등의 지원)

①~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「보조금 관리에
관한 법률」 -----

-----.

제21조(사용료의 부과·징수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맞도
록 -----
-----.

제22조(사용료의 감면 등)

① -----

----- 줄일 -----.

1. -----

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(자치구는 제외한다) :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. 다만, 숙박(연수)시설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.

2.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「여성발전기본법」에 따른 여성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: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. 다만, 숙박(연수)시설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.

② 시장은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

1. 제1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: 해당 사용료 각각 면제. 다만, 제14조 제2항 제1호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는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2. 두 자녀 이상의 「다둥이 행복카드」 소지자: 100분의 20을 경감한다.
3. 그 밖에 교육과정의 이용률, 교육운영시간, 교육과정의 특성 등

---- 줄임 -----

--- 줄인다.

----- 줄임 -----

----- 줄인다.

② -----

----- 줄임 -----.

----- 줄인다.

----- 줄인다.

3. -----

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해당
교육과정 사용료의 100분의 20을
경감한다.

제29조(지도·감독)

① (생 략)

②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설치·운
영과 관련하여 위법·부당사항·운
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
고, 시정명령, 보조금 교부결정 취
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줄인다.

제29조(지도·감독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지급결정 --
----- 뺄 수 --.